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3월 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표기 변경(안 제12조, 제19조)

나.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변경하는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례 구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수도사업의 설치)”를“(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활용수 그밖의 징수”를 “생활용수 또는 그밖에 정수”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이”를 “그밖”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도사업 기타”를 “수도사업, 기타”로, “둔다”를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로 한다.

제8조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도 사업”을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회계년도)”를“(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다음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을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균공급가격이하”를 “평균 공급가격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재정지원”을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복금”을 “자본금”으로, “년도”를 “연도”로, “그비율”을 “그 비율”로 한다.

1. 창업 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비상재해등”을 “비상재해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부담으로하여 군수명의”를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하는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년도 에”를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녀도의 결손금을 보전”을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상환된”을 “상환하지 아니한”으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및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회전기그릇”을 “회전기금”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제40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함께 다음 각호”를 “함께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관리자가”를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군수에게”로, “제시”를 “게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u>생활용수</u> 그밖의 <u>정수</u>를 공급하기 위하여 <u>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생활용수 또는 그</u> <u>밖</u>에 정수----- <u>지방공</u> <u>기업법 제5조</u>----- ----- ----- ----- ----- ----- -----.</p>
<p>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u>각호</u>의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 략)</p> <p>3. <u>기타</u>에 유사한 사업 및 그 에 부대되는 사업</p>	<p>제2조(사업의 범위) ----- ----- ----- <u>각 호</u>----- ----- 1. 2. (현행과 같음) 3. <u>그밖</u>----- -----</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u>수도사업</u>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u>둔다</u></p> <p>②<u>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다.</u></p>	<p>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u>수도사업, 기타</u> - ----- ----- <u>두되, 관리자는 부군</u> <u>수가 된다.</u> <u><삭 제></u></p>
<p>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u>범위내</u>에서 필요한 하부</p>	<p>제5조(조직) ----- ----- ----- <u>범위 내</u>-----</p>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
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한 변
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액에 충
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0조(회계년도) (생 략)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
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

제8조(기업관리규정) -----

----- 받아야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
업-----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년도)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회계부담) -----
---- 관계 법령-----
----- 다음 각 호

-----.

1. -----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생략)

제12조(출자) ① 평창군 일반회계 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3. (생략)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이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 "영" -----

2. -----
----- 평균
공급가격 이하-----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자) ①-----
----- 각 호

-----.

1. 창업 시

2. 3.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 회계처리한다.

③-----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
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
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복금 총
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
르고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
의 1이하를 그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
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생략)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하여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 수 있다.

④ -----
----- 자복금 -----

----- 년도 -----
----- 그 비율 -----
-----.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

-----.

1. 비상재해 등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채) ① -----

----- 부담으로 하여 군수
의 명의로 ----- . -----
----- 특별
회계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생략)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각 호 -----
--- 해당하는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3. -----
----- 사업연도에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충 -----
-----.

1. (현행과 같음)
2. 상환하지 아니한 -----
----- 다음 해 -----

3. 제1호 및 제2호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회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전기금 -----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 회계처리상황-----

----- 함께 다음 각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각호-----
----- 사업연도 -----

-----.

-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군수에게 -----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